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수신처참조
참 조
제 목 「장기이식법」 시행규칙 개정·공포 안내

1. 관련 근거: 보건복지부령 제1121호(2025.7.7.)
2. 「장기이식법」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·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<주요 내용>

-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이식 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, 1년 후부터는 1년마다 제출하도록 함(제24조제3항 신설) *2025.8.21. 시행
- 유급휴가 보상금 산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'진료비 계산서' 등에서 '입·퇴원 확인서'등 서류로 변경(제26조제2항제4호가목) *2025.7.7. 시행
-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 신청 서식 변경(별지 제4호 서식) *2025.8.21. 시행
- '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'에 뇌사판정기관장이 기증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안 내문구를 추가함(별지 제6호 서식) *2025.7.7. 시행
-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, 장제비·진료비, 사전검진 진료비, 정기검진 진료비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모두 30일로 정함(별지 제 23호 내지 제26호 서식) *2025.7.7. 시행

- 붙임 1.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1121호, 2025.7.7.)
2.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친구조문대비표

붙임 자료는 '협회 홈페이지-알림마당-공지사항' 또는 '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수신처

장기이식의료기관장

사원 이윤서 팀장 유소영 국장 장은혜

시행:정책 제 2025-218 (2025.07.08)

우편번호 04165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 13층 대한병원협회
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44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 : 02-705-9219) E-mail : lys@kha.or.kr